



# 주식백지신탁제도

---

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

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

# 목차

1 제도의 개요

2 주식의 매각

3 주식의 백지신탁

4 직무관련성 심사

5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

6 행정사항



## 제도의 취지

- ▶ 고위공직자가 **직무 관련 주식**을 보유한 경우, 공무수행 과정에서 **공/사적 이해충돌**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, 그 주식을 **매각 또는 백지신탁**을 하게 함

### 원칙

매각 또는  
백지신탁



재산등록기관  
신고



관보/공보  
공개

### 예외

직무관련성  
심사청구



심사위원회  
심의·의결



결정서 통지



- ▶ **【관련성 있음】** 매각/백지신탁 ⇒ 신고 ⇒ 공개
- ▶ **【관련성 없음】** 주식 보유 가능



# 1. 제도의 개요

---



- ◆ 제도의 취지, 처리절차 개관
- ◆ 대상자, 대상주식, 의무이행기준일

## 대상자 : 재산공개자 등

- ▶ 정무직 : 국무위원, 국회의원, 단체장, 지방의원 등
- ▶ 고위직 : 일반직 1급, 고법 부장판사, 대검찰청 검사 등
  - ※ 금융위원회 4급 이상, 기획재정부 금융관련 4급 이상
- ▶ 공직유관단체장 : 공기업의 장, 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등

## 대상주식

- ▶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
  - ※ 이해관계자 : 배우자, 본인의 직계존비속(제외대상 : 혼인한 딸, 외조부모, 외손자녀, 고지거부자 등)

### ▶ 총가액 산정방법(법 제4조 제3항 제7호)

-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(유가증권, 코스닥, 코넥스) ⇒ 최종 거래가격
- 장외거래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(금융투자협회 프리보드)  
⇒ 재산등록기준일의 기준가
- 비상장 주식 ⇒ 액면가액

## ▶ 주의대상 주식

### < 직무관련성 없음 고시된 주식 >

- 투자회사의 주식(Mutual Fund) : 부동산, 선박, 해외자원개발, 문화산업 등  
예) 맥쿼리인프라, 맵스리얼티, 골드나래리츠, 아시아11호, 한국ANKO유전, 직장의신문화산업전문회사 등
- 외국기업의 주식

### < 랩어카운트 : 자문형 랩, 일임형 랩 >

- [개 념] 증권사가 고객과 **투자일임계약**을 체결하고 해당계좌를 관리·운영  
예) 삼성증권 POP골드랩, 우리투자증권 옥토랩, 신한금융투자 세븐아이스 자문형랩, 브레인 자문형랩 등
- [기 준] **종목당 3천만원** 초과시, 매각·백지신탁 또는 심사청구
- [예시1] 랩을 A, B, C계좌에 각각 개설하였는데 특정 종목이 A계좌에 1천만원, B계좌에 1천만원, C계좌에 2천만원 있는 경우 ⇒ **총가액 4천만원**이므로 대상주식임
- [예시2] 특정 종목을 일반 주식으로 2천만원, 자문형 랩으로 2천만원 보유한 경우  
⇒ **총가액 4천만원**이므로 대상주식임

### < 우리사주 >

- [취 지] 장기간 보유하여 근로자 재산형성 및 기업생산성 제고
  - [기 준] 근로복지기본법상 **의무예탁기간** 중인 경우 ⇒ 대상주식 아님
- ※ 증빙자료 : 해당 우리사주조합에서 발급한 **예탁기간이 표시된 확인서**

## 의무이행 기준일

▶ 다음 기준일로부터 **1개월 이내**에 매각·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

- 공개대상자가 된 날 (일반직 승진, 정무직 취임 등)
-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
-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통지 받은 날
- 백지신탁 후 상속 등의 사유로 주식을 새로 취득한 날
- 공개대상자의 직무가 변경된 날
  - ※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는 **상임위가 변경된 날**을 의미
- 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





## 2. 주식의 매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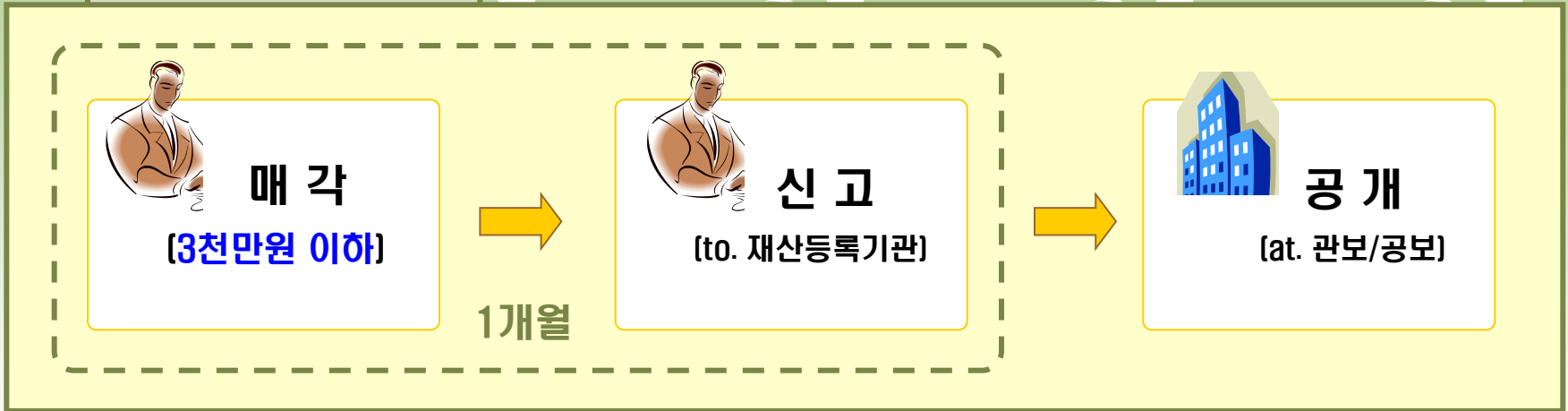
---



◆ 주식의 매각 및 사후조치



# 매각 처리절차



- 국회의원, 기타 국회 소속공무원
- 법관, 기타 법원 소속공무원
- 헌법재판관, 기타 헌법재판소 소속공무원
-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소속공무원

- 정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

-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및 의회 의원

- 시·도 교육청 소속공무원

- 공직유관단체 임·직원

- 해당기관 사무처 (또는 행정처)

- 안전행정부

-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

- 시·도 교육청

- 안전행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

# 3. 주식의 백지신탁



- ◆ 백지신탁의 개념
- ◆ 계약의 체결 ⇒ 신탁자산 운용 ⇒ 해지
- ◆ 계약 체결시 고려사항

## 백지신탁이란?

- ▶ 고위공무원(신탁자)이 자산의 관리·운용 및 처분 권한 일체를 금융회사에 신탁(Trust)
- ▶ 금융회사(수탁자)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변경
- ▶ 신탁자가 변경된 자산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차단(Blind)함으로써, 재직 중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보유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 발생



삼성전자  
기아자동차  
대한항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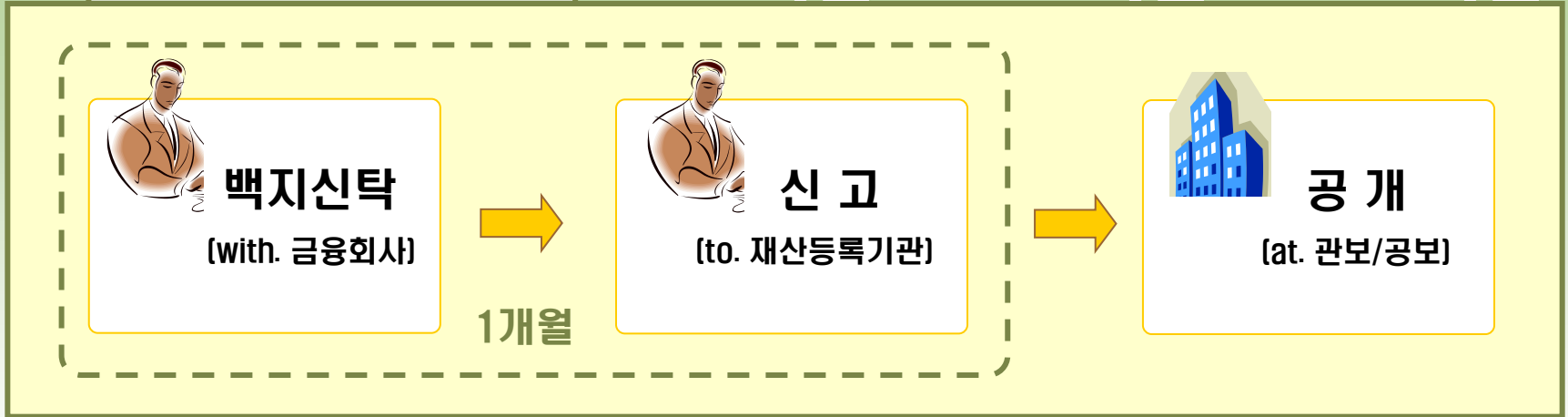
Trust  
Blind  
(관리·운용 처분권)



60일 이내

SK텔레콤  
현대중공업  
중국채권

## 백지신탁 처리절차



## 백지신탁계약의 체결

▶ 수탁기관 : 신탁업자(신탁업 경영 은행·증권사 등 포함), 집합투자업자

※ 대부분의 백지신탁을 **농협중앙회**에서 취급

▶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, **새로운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**(시행령 제27조의9)

### 《 예외적 취득사유 》

- 상속, 증여, 담보권 행사, 대물변제의 수령 등
-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, 교환사채의 권리행사
-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우리사주 취득
- 주식매수선택권(stock option) 행사
- 공개대상자 등이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행사

## 신탁자산의 처분 및 운용

▶ 수탁기관은 **60일 이내** 당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 ⇒ 다른 주식이나 금융상품으로 운용

- 수탁기관은 60일 이내 처분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 연장 가능(\* 연장회수 제한 없음)
- 수탁기관은 매년 1월중 전년도의 신탁재산의 관리·운용·처분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함

▶ 신탁자산에 관한 운용정보 제공 및 관여 금지

⇒ 위반 시, **백지신탁 관여의 죄**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
▶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한 경우, 일체의 **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**

## 백지신탁계약의 해지

▶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백지신탁 해지 가능

- 신탁주식의 가액이 3천만원 이하로 하락
- 신탁주식의 전부 매각
- 퇴직·전보 등의 사유로 공개대상자에서 제외 [※ 상임위 변경은 해지사유 아님]

## 백지신탁계약 체결시 고려사항




### 《 장 점 》

- ▶ 공·사적 이해충돌의 회피
  - 정책의 대국민 신뢰를 확보 가능
- ▶ 전문적인 자산관리
  - 신탁자가 기본적 운용방법을 제시

### 《 단 점 》

- ▶ 백지신탁 해지사유가 제한적
  - only. 3천만원 이하 / 전부 매각 / 퇴직
  - 상임위 변경은 해지사유 아님
- ▶ 모든 주식의 신규취득 불가
  - ex. 재선 의원은 8년간 주식투자 불가
- ▶ 손해 발생의 우려
  - ex. 우량 비상장주식은 경영권 상실 소지



# 4. 직무관련성 심사

---



◆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

# 4. 직무관련성 심사

## 1.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설치

- 법 제14조의5에 따라 안전행정부에 설치('05.11)
- 위원회 구성
  - 국회, 정부,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추천하고, 대통령이 9명을 임명  
[자격은 공직자윤리위 위원, 법관, 교육자, 주식관련 금융전문가 등]
  - 임기 2년, 1차에 한해 연임 가능
- 위원회 개최 실적('05.12월~'14.3월)
  - 총 67회 개최(연 8회 정도)/ 3,040건의 직무관련성 심의 의결



# 4. 직무관련성 심사

## 2. 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

- 직무관련성 심사기간
  - 심사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  
[다만,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]
  -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
    - 청구인 본인에게 1부, 재산등록기관에 1부씩 등기로 송부
- 직무관련성 심사 기준(법 제14조의5)
  - 심사청구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 · 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 
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

## 4. 직무관련성 심사

### 3. 심사 청구 시 속지 사항 (각하 사항)

- **직무관련성 심사대상 주식여부 확인**
  - 채권, 투자회사주식, ETF, 수익증권, 기업어음 등은 심사대상 주식이 아님
- **기존에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받은 주식 여부 확인**
  - 담당 직무(상임위원회) 등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, 기존에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받은 주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
- **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주식 총가액의 3천만원 초과 여부 확인**
  - 1원이라도 3천만원을 초과 해야 하며,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으로 계산하여 3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필요

# 4. 직무관련성 심사

## 4. 직무관련성 심사결정서 통지 받은 후 조치 사항

- ‘직무관련성 있음’ 으로 통지 받은 경우
  -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재산등록기관에 신고
  - 단, 직무관련성 있다고 결정된 주식의 총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하일 때는  
주식 보유 가능
- ‘직무관련성 없음’ 으로 통지 받은 경우
  - 해당 주식 보유

# 4. 직무관련성 심사

## 5. 직무관련성 재심사 청구 사유

- ‘직무관련성 없음’ 으로 통지를 받아, 주식을 보유하던 중
  - **승진 또는 전보 등으로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**  
(예 : 소속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경우, 직제개정 등으로 사실상 직무가 변경된 경우)
  - 새로운 주식을 **3천만원을 초과 취득한 경우**
  - **관할구역내 기업체 이주, 관할부서와 계약체결 등을 하는 경우**
- 3천만원 이하의 ‘직무관련성 있음’ 결정 주식을 보유하던 중
  - 신규 주식 취득으로 보유 가액이 **3천만원을 초과**(직무관련성 있음 주식과 새로운 주식의 합산가액)하게 된 경우
- 이미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
  - **상속 및 영 제27조의9의 사유에 따라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**

# 5.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



# 5.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

## 의무위반시 제재(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)

### 1. 경고 등(법 제14조의4 제6항에서 제8조의 2 준용)

- 법 제8조의2(심사결과의 처리): 경고, 과태료, 일간신문 공표,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

### 2. 과태료 부과(법 제30조)

-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

### 3.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(법 제22조)

### 4.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(법 제24조의2)
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### 5.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(법 제28조의2)

-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

# 6. 행정사항



# 6. 행정사항



## 각 기관 공직윤리업무 담당자 협조사항

- **주식백지신탁제도 사전 안내 철저**
  - 소속 재산공개자 대상 ‘제도 취지 및 의무이행 사항’ 적극 안내
  - PETI 게시자료 ‘심사청구 및 매각신고 절차(샘플, 서식)’ 적극활용 안내
- **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이행 여부 주기적 관리**
  - 소속 백지신탁대상자 및 의무이행 현황을 수시 파악, 점검
    - 특히, ‘관련성있음’ 결정된 경우, 기한내 조치(1개월내 매각또는 백지신탁)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고
- **심사청구시 감사부서(주식백지신탁업무 담당자) 경유하여 위원회 제출**
  -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시 반드시 감사부서(백지신탁업무 담당자) 경유





감사합니다!